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3
----------	------

제출연월일 : 2002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모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 등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함 (안 제7조).
- 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 단서신설).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행정자치부 표준안('99. 11)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2.7.1.이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 권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담당 최 종 재
	담당자 성명·전화	이 석 종 (행정 31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u>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u>(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 (적용범위) ①----- ----- <u>〈삭 제〉</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u>단위기관에서 전보</u>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 (전보) ----- ----- <u>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u> ----- ----- -----</p>
<p>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u>〈단서 신설〉</u></p> <p>② (생략)</p>	<p>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 ----- ---- <u>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u> ② (생략)</p>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53
------------	------

제안년월일 : 2002. 7. 15.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부칙 중 조례 규정 적용 시한이 불합리하여 적용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부칙 제2항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2. 7. 1. 이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함.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u>부칙</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례)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2.7.1이후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p>	<p><u>부칙</u></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